

# 한국과학창의재단 정관

제정	1967.12.20
개정	1972. 1.20
개정	1975. 4.18
개정	1976. 9.24
개정	1978. 7.20
개정	1979. 2.12
개정	1979.11.18
개정	1980. 4. 3
개정	1981. 3. 1
개정	1982. 3. 1
개정	1983. 3. 1
개정	1989. 2. 2
개정	1990. 1.25
개정	1990. 3.31
개정	1991. 3.29
개정	1991. 5.18
개정	1994. 7.18
개정	1996. 3. 9
개정	1997. 8.22
개정	1999. 2.12
개정	2001. 1.29 (설립목적, 사업내용, 당연직이사, 이사회운영)
개정	2001. 3.22 (경영공시제도, 기관장 후보추천 위원회 명문화)
개정	2002. 4.17 (기관장 선임 의결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)
개정	2002.10. 9 (목적사업, 당연직이사 추가)
개정	2003.12.30 (선임이사 임기 관련)
개정	2004.11.25 (당연직이사 변경, 기관장후보자 공개모집)
개정	2007. 4. 5 (당연직이사 변경)
개정	2007. 6.11 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적용)
개정	2008. 3.21 (교육과학기술부 명칭 변경 및 당연직이사 변경)
개정	2008. 9. 6 (명칭, 목적, 사업, 당연직이사 변경)
개정	2010. 2.25 (비상임 이사 추천 관련)
개정	2010.11. 3 (당연직이사 변경, 11~14조 조문 일부 개정)
개정	2011. 3.10 (당연직이사 변경)

- 개정 2012. 6.29 (교육연수원 기능 추가)
- 개정 2013. 4.19 (정부조직 명칭 변경 및 당연직이사 변경)
- 개정 2013.11.01 (당연직이사 추가)
- 개정 2013.12.27 (당연직이사 변경)
- 개정 2015. 1.29 (당연직이사 변경)
- 개정 2015. 4. 1 (당연직이사 변경)
- 개정 2015.12.23 (당연직이사 변경)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재단은 재단법인 한국과학창의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약칭한다)이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재단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널리 보급·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며, 국민의 창의성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본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및 지원 시설을 둘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)** ① 본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
2.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
3. 과학기술문화활동,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및 담당단체의 육성·지원
4. 과학기술홍보, 과학기술문화확산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대중매체사업 운영 및 지원
5. 수학·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
6.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수학·과학 교육과정의 연구개발
7. 수학·과학 국정교과서 개발·지원
8. 수학·과학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
9. 수학·과학교육과정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료 발간
10. 수학·과학교육과정에 관한 교육·연수·홍보 및 운영지원
11. 교원 등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·연수 지원 및 교육연수원 운영 <개정 2012.6.29>
12. 과학영재의 발굴·육성 및 지원 등 과학영재 관련 사업
13. 과학기술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·예술 등 융합 프로그램 개발

지원

14. 과학기술문화 및 창의적 인재육성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
  15.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교육을 위한 방송채널 사용사업
  16. 기타 정부 및 국내외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수탁사업
  17. 기타 본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
-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.
1. 부동산의 임대
  2. 출판, 영상, 기타 과학문화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
  3. 기타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
-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 2 장 재산과 회계

**제5조(재산의 구분)** ① 본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정부, 국내·외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또는 출연 받은 토지, 건물 등의 부동산
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③ 본 재단의 설립당시 자산의 종류, 상태 및 평가액은 <별표 1>과 같다.

**제6조(지적재산권의 귀속)** 재단 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, 발명권,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재단에 귀속된다.

**제7조(재산의 관리)** ① 제5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각, 증여, 임대, 교환 및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본 재단이 매수, 기부 채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8조(운영재원)** 재단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, 정부출연금, 기금출연금, 민간출연금 및 기부금, 사업수입, 수탁·용역사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
**제9조(회계연도)**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10조(운영계획의 제출 및 결산서의 승인)** 예산이 확정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3.4.19>

### 제 3 장 임원 및 직원

**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)** ① 본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이사장 1인
2.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포함)
3. 감사 1인

②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,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 비상임 이사 1인을 둔다.

③ 삭제 <2010.11.3>

**제12조(임원의 임면)**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.)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4.19>

② 비상임 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임명한다. 다만, 다음 호의 직에 임명된 사람은 재임기간 중 당연히 재단의 이사(이하 “당연직이사”라 한다.)가 된다. <개정 2004.11.25, 2010.02.25, 2010.11.3, 2013.4.19>

1. 미래창조과학부 주무부서 국장 <개정 2011.3.10, 2013.4.19., 2013.12.27., 2015.4.1., 2015.12.23.>

2. 교육부 주무부서 국장 <신설 2013.11.1. / 개정 2015.1.29., 2015.12.23.>

③ 감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10.11.3>

④ 이사장 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, 비상임 이사의 모집은 공개모집, 추천방식,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결정한다.

⑤ 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⑥ 기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 < 개정 2010.11.3>

**제13조(임원의 임기)**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<개정 2010.11.3>

② 제1항에 따른 연임은 임명권자가 결정하며,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

다. <개정 2010.11.3>

- ③ 임원의 임기는 임명권자의 임명일로부터 개시한다. <개정 2010.11.3>
-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

**제14조(임원의 결격 사유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재단의 임원(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)이 될 수 없다.

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.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<개정 2010.11.3>
- 3. 삭제 <2010. 11. 3>

**제15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본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재단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.
-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, 재산상황 및 사무를 감사하며,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**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제15조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직무대행이사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당연직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.11.1>

**제17조(직원)** 재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**제18조(전문인력의 파견)** 재단은 제4조의 사업목적 달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교육기관·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파견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이 사 회

**제19조(이사회 설치 및 구성)** ①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,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이사회는 간사와 서기는 약간 인을 두되, 재단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따로 임면한다.

**제20조(의결 및 보고사항)**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1. 기구 및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
- 2. 본 재단의 운영계획, 예산, 결산, 장기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

3. 경영목표 및 이사장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
7. 직제, 회계, 보수 등 중요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8.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
9.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
10.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
11. 기타 본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국정감사, 회계감사,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
2.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
3.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

**제21조(의결정족수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이사회에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정관변경 및 재단의 해산에 관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2조(참여제한)** 이사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의결정족수를 위한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.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 재단과 이해가 상반될 때

**제23조(회기)**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.

**제24조(이사회 소집)**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
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,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25조(회의록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결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출석이사 3명 이상과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 회의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재단의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**제26조(이사회 규정)**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규정을 정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자문기구 등

**제27조(고문 등)** ① 본 재단에 고문 등 약간 인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 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 재단 육성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추대한다.

③ 고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고문 등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제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**제28조(자문기구의 운영)** ① 재단의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·자문위원 등 자문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29조(위원회의 설치)** ① 이사장은 재단의 주요한 사항의 심의 및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제 6 장 부설 기관

**제30조(부설기관)** ①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부설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

②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 7 장 보 칙

**제31조(정관의 변경)**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32조(해산)** 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3조(잔여 재산의 귀속)** 본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.

**제34조(공고사항 및 방법)**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본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
2. 기타 본 재단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에 공지하여야 할 사항

**제35조(경영공시)** 재단은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영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경영공시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36조(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)** 본 재단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

####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

직 위	성 명	주 소	임 기	비 고
이사장	윤일선	영등포구 노량진동 산 28-22	2년	
이 사	서진수	중구 남대문로 3가 110	"	
"	홍재선	중구 남대문로 1가 14	"	
"	이기중	종로구 혜화동 22-2	"	
"	이재철	중구 장동 2	"	
"	신동식	종로구 세종로 1	"	
"	박두승	중구 소공동 111	"	
"	이 활	중구 남대문로 2가 123	"	
"	안동혁	종로구 명륜동 2가 155	"	
"	김연준	성동구 신당동 140-29	"	
"	구자경	종로구 원서동 136	"	
감 사	윤희수	종로구 소격동 9	"	

#### 부 칙

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이사장 김 승 환



<별표 1>

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

1. 기본재산 총괄표

(1967년 12월 20일 설립)

재 산 명	수 량	평 가 액	비 고
유동자산	58,000,000원	58,000,000원	은행 정기예금

2.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

재 산 명	주소지	지번	지목	지적	평가액	비 고
유동자산	상업은행 본점				51,900,000	정기예금 20구좌
	"				1,700,000	새생활예금
	유상근외 18명				4,400,000	어음 16매
계					58,000,000	.